

##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298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13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□ 개정사유

학교신설, 소규모학교 통·폐합으로 인한 분교장개편, 본교폐지, 분교장폐지 등으로 학교명칭이 변경되고,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신설학교(청주시 울량중학교외 5교) : 덧붙임
- 분교장개편 학교(제천군 봉남국민학교외 8교) : 덧붙임
- 본교폐지 학교(진천군 신덕국민학교) : 덧붙임
- 분교장폐지 학교(중원군 세성국 살미분교장외 9교) : 덧붙임
-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(청주시 산남국민학교) : 덧붙임

### □ 제안근거

- 교육법 제82조(설립자) 및 교육법 제85조(학교의 설립·폐지)
- '94. 국·중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국민학교 통·폐합계획

□ 조 례 안 : 덧붙임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: 덧붙임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관계 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'94.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소규모국민학교 통·폐합 기준 : 덧붙임
- 예 산 상 황 : 해당사항 없음

##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)의 별표3,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